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4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이인선 · 안철수
고동진 · 김선교 · 박충권
배준영 · 최수진 · 박준태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민·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, 농협·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.

도·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(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“당기순이익과세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[illegible]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
대한 비과세) -----

2030년 12월 31일-----

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	---